

국내·외 대학(원)에서의 교과목이수와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에 의한 본교 대학원 또는 국내·외 타 대학(원)(이하“교류대학”이라 한다)에서 교과목이수와 이수학점의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류대학의 범위) ① 이 규정에 의해 이수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류학점의 범위는 본교와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원)에 한한다. 단, 본교와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원)중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한 대학(원)은 포함한다.

② 전항의 대학(원)에는 총장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제3조(구분)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교 대학원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원)(이하“국내대학”이라 한다)에서의 교과목 이수
2.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원)(이하“외국대학”이라 한다)에서의 교과목 이수
3. 외국대학에서의 단기연수(이하 “단기연수”라 한다)에 의한 교과목 이수
4. 해외캠퍼스 파견 프로그램에 따른 해외어학실습수업에 의한 교과목 이수

제4조(신청자격)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통사항
 - 가. 본교에서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나.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다.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라. 취득성적이 총 평점평균 B(3.0) 이상인 자
2.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이수
 - 가.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 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신청 및 선발절차) ① 국내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공주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지원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교육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학생을 선발한다.

④ 전항의 심사를 위해 필요시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부(과)별 단기연수) 학생선발, 인원, 기간, 비용, 출국수속 등 필요한 사항을 학부(과)에서 주관하며, 외국대학에서의 연수실시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교학지원처를 경유하여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①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류대학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교류대학이 국내 대학인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교류대학 수학계획서를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거쳐 교학지원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교 교학지원처에 수강과목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본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9조(전과목 이수의 포기)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강기간) ① 교류대학에서의 수강기간은 재학 중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방학기간 중의 계절학기 및 외국대학에서의 단기연수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취득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단, 학위연계과정을 이수 중인 자 또는 우리대학의 성적평가 이전에 학점인정을 완료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단기연수 기간은 4주 이상 또는 시수로 9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1.13>

④ 수강기간 중 본교 총장의 허가 없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⑤ 국제교류교육원은 외국대학에 교류학생으로 선발 또는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교학지원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류대학에 파견되어 교과목이수 중인 학생은 파견기간 중 본교 정규 및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국내 학점교류 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9조(학점인정) ① 교류대학의 학기가 종료되었거나 수강기간이 만료되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신청서를 국내대학은 교학지원처에, 외국대학은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교류교육원은 전항에 의해 제출된 학점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교학지원처에 전달하여야 하며 교학지원처장은 이를 해당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에게 전달하고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전항에 의해 교학지원처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심사한 후 학점인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학지원처에서는 전항에 의해 제출된 학점인정조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성적 실 점수 인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교류대학은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실점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국내 교류대학에서의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에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1개 학기에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외국대학에서의 단기 연수에 의한 교과목이수와 국내대학의 계절학기 수업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학칙 제29조에서 정한 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수의 범위내로 한다.

⑥ 인정과목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 교육과정에 동일 과목 또는 유사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인정과목의 배점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배점을 준용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교류학생의 의무) ① 교류학생은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전액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교류대학에서의 학점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단기연수 수학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8조의 수강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서 승인한 교류대학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지도) 교류학생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협약과의 관계 등) ①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학칙 등 관련 규정과 교류대학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교류대학과 체결한 협약과 상치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08.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